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29

발의연월일: 2021. 7. 30.

발 의 자 : 이 영 · 서일준 · 추경호

이채익 · 조명희 · 윤두현

이명수 · 양금희 · 김은혜

한무경 • 태영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및 납부특례,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제도가 올해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 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	①
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	
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	
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u>2021년</u> 12월 31일 이전에 「벤	<u>2026년</u>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	
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	
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	
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 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 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 3. (생 략)
 - ②・③ (생략)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

1억원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u>2026년</u>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

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 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 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 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 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 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 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2
<u>026년</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